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관한 입장문

한국전문간호사협회는

"의사단체의 간호사, PA 불법의료행위 고발"을 기억합니다.

(의사신문 2018.12.11., 연합뉴스 2018.12.12,
의협신문 2019.8.2, 데일리메디신문 2019.10.19. 등)

하나. 의사들과 의료기관에 요청합니다.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 발생 시 간호사에게 전공의나 인턴의 대체인력으로서 불법행위를 강제하지 마십시오."

둘. 보건복지부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합니다.

"의료기관이 간호사들에게 불법행위 강제 시 행정조치를 내려주십시오."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의 합법적 업무 수행을 위해 업무범위 설정을 위한 하위법령 입법 절차를 속히 재개하고 법시행을 이행하여 주십시오."

(의료법 제 78조, 2020년 3월28일 시행)

셋. 대한간호협회와 병원간호사회에 요청합니다.

회원들의 법적 신분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간호사에게 불법행위를 강제하는 의사나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해 주십시오."

"의사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간호사에게 불법행위를 강요하지 않도록 의사와 의료기관에 촉구해 주십시오."

2020년 8월 26일

한국전문간호사협회